

## 법률독어 연구

### - 개념 파악과 연구방법 모색 -

방경원(한국외국어대)

#### 1. 들어가는 말

사회가 다수 의견을 수용하는 민주적인 체제로 진전됨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이해 관계도 복잡해진다. 이 이해 관계를 보편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 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일수록 법률 수요가 많다. 법을 운영하는 데는 언어가 중요한 수단이다. 이 글에서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수단으로 이용되는 법률언어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소개한다.

법조문, 법 해석, 법 실행 등 모든 법률행위는 언어를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법 해석의 경우 언어 이해가 기초가 되며 이런 점에서 법학은 신학이나 문학에서 다루는 언어적인 분석과도 연관이 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언어에 기초한 법 해석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었다.<sup>1)</sup> 20세기 들어 사회 각 분야가 전문화되면서 법과 관련된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언어를 중시하는 법 해석의 연구경향은 바뀌게 된다. 언어를 여전히 중시하는 법 전문가 외에 법 자체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법 기술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때 전문화된 법 연구와 적용은 통상적인 언어사용 규칙과 거리를 두게 된다. 그래서 법은 법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며 법을 알고 지켜야 하는 대부분의 일반 언어사용자는 이 법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법 지식에 대한 법률 생산자 및 전문적인 해석자들과 일반 수용자 사이의 이런 괴리 현상은 법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하는 원래 기능을 가로막는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법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시 문제가 되며 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언어학자들도

1) 이미 19세기 초에 새비니 Savigny는 “법학은 문헌학 Die Jurisprudenz ist eine philologische Wissenschaft”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그의 이론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Friedrich Karl von Savigny(1802), Besonders S. 15. 다음 출처에서 재인용: Dietrich Busse(1992), Besonders S. 1.

관심을 갖는다.<sup>2)</sup>

국내에서는 아직 법률언어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소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sup>3)</sup>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법률언어 연구의 흐름을 설명한다. 이는 2장에서 다룬다. 다음으로 법률언어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면 그 연구대상에 대해 개념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3장에서 다룬다. 4장에서는 법률언어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5장에서는 앞으로의 법률언어 연구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이 글을 마감한다.

## 2. 법률독어의 역사와 연구현황<sup>4)</sup>

법률어는 사냥꾼이나 선원들이 쓰는 말과 함께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다. 하지만 법률어를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남겨둔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간헐적으로 법률 전문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한 연구물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률독어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에 설명하는 법률독어와 법률독어 연구에 관한 정보도 체계적이지 못하며 가설적인 추측이나 한정된 영역에 의존하고 있다. 법률독어의 역사와 연구현황을 총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법률독어 중 가장 잘 연구된 분야는 법진언어 *Gesetzessprache*이다. 독일에

- 
- 2) 독일에서 법학자들의 법률언어에 대한 관심은 크며 법률 연구자들은 언어학자와의 공동작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이는 법이 언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언어학자들은 언어연구가 자신의 고유 영역이지만 법률분야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고유한 사고체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학자들과 공동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언어의 실제 관찰에 대한 연구경향이 언어학에 자리잡으면서 언어학자들도 법률분야 언어연구에 관심을 갖는다. 참고: Dietrich Busse(1992), *Besondes* S. 1-14.
  - 3) 국내에서도 제도권 및 관청언어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있다. 그러나 아직 법률독어라는 범주 속에서 이런 개별적인 연구를 자리매김 하는 시도는 없다.
  - 4) 이 정보는 다음 글에서 요약했으며 함께 언급된 문헌도 재인용했음: Bernd Jean d'Heur(1998), *Besonders* S. 1286-1287.

서 법전은 중세전성기 Hochmittelalter 때부터 나타나며 이 때는 거주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수준은 오늘날 경찰규칙 Polizeiordnung에 해당한다. 로마법의 수용과 이의 배척 과정을 거치면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대 법전편찬 Große Kodifikation이 있게 된다. 19세기에는 법률언어 선택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이 있으며 이의 성과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법률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독일어로 된 대부분의 법전은 1871년에 완성된다.

1896년부터 독일 법률사전 Deutsches Wörterbuch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된다. 이 사전에는 독일어권에서 사용되는 법률 전문용어도 광범위하게 수록한다. 여기서의 사전 편찬원칙은 전문어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호른 Horn(1966)은 법률언어와 일상언어 사이의 관계를 문제삼는다. 70년대 들어 사회언어학적인 연구경향에 영향을 받아 법정에서의 언어사용 시 어려운 점이 다루어진다.(Bausinger 1976, Kallmeyer 1983) 같은 시기에 관청독어 Amtsdeutsch를 알기 쉽게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다.(Wagner 1972, Otto 1977) 전문어 연구방향과 평행하게 1990년대 이후로는 법률전문어 연구는 법률분야의 전문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과제에 집중한다.

최근 세계화 과정이 지구상 곳곳에서 진전됨에 따라 이질적인 문화권끼리 교류가 잦아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접하게 된다. 하지만 법이 생성되는 데는 법 이론적인 근거와 함께 각 지역사회의 관습도 함께 관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이 관여된 법률분쟁에서는 법 지식 이외의 그 지역의 법 관습 지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권의 법률텍스트 비교연구도 활발하다.<sup>5)</sup>

국내에서 법률독어 연구에 대한 관심은 아직 시작 단계이다.<sup>6)</sup> 우리의 근대 법 생성과정에서 일본을 통한 독일법의 수용과 이로 인한 독일어 수요가 생겨난 배경을 소개한 글도 있다.(김순임 2001) 이 글에서는 우리 법이 생성되는 배경을 고려하면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이에게 독일어 학습은 보조학문으로서 필수적임을 잘 납득시켜 준다. 다만 법률분야의 국가 자격 및

5) 다음 논문 모음집에서는 법률 문서를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물음들을 다루면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규명한다. 참조: Peter Sandrini(1999).

6) 참고로 법률독어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논문 한 편을 소개한다: 김양훈(2000).

임용시험에서 제2외국어 과목이 삭제됨에 따라 대학에서 법 수강생들에게도 독일어 학습이 외면당한다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같은 논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법은 한 번 정착되면 그 근본 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독일 법을 많이 수용한 우리 법을 비판적으로 잘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한 법 수강생들에게 독일어 학습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 이런 외부적인 변화 속에서도 언어 연구자들은 법 전문가들에게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법률독어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면서 언어적인 면에서 독일 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더 나아가 법률독어 연구결과를 도움으로 다른 언어 사용지역의 법문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법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3. 개념 설명

이 글에서 법률언어는 개별적인 언어인 독일어에 국한하여 법률독어로 이해한다. 법률독어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법률독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다음 소단원에서 다룬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률독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소단원에서 연구방법상 경험적으로 법률독어 연구대상에의 접근을 시도한다.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법률독어는 텍스트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의 유형별 관찰은 법률독어 연구대상에 접근하는 데 한 대안이 된다.

#### 3.1. 법률독어

법은 학문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적용 대상이 사회구성원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계층도 광범위하다. 이는 법이 경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분야에서 전문어를 사용하는 계층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보다 구분이 된다.<sup>7)</sup> 법률독어에는 전문인과 일반인이 법률 관련분야에서 사용하

7) 경제독어 연구대상을 설정할 때도 같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박은 다음 글 참

는 언어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률독어 전체를 분류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전문어를 분류할 때 내용에 따른 수평적인 구분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른 수직적인 구분을 법률독어 분류에도 적용해 본다. 이때 기관, 법률적인 사실, 전문어 사용집단, 해당 텍스트유형 등의 특정 범주에 따라 각각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분류를 시도하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관을 수직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전문성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법률전문어 텍스트를 수직적으로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힘들다. 다음은 또 다른 법률독어 분류의 예이다<sup>8)</sup>:

- (1) 법조문
- (2) 판결문
- (3) 학문적이거나 감정하는 글
- (4) 관청에서 서신 및 서류교환 시 사용하는 말
- (5) 행정 업무상 특수하게 통용되는 말
- (6) 기타

이 경우에는 기관으로도 또 다른 분류 범주에 따라서도 그 분류 기준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상적인 변호사나 공증인 사무소를 가정하고 여기서 쓰는 언어를 법률독어의 연구대상으로 삼자는 제안이 있다. 이상적이라 함은 이런 사무소에서는 보통 공법과 사법(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개인특별법)을 수평적으로 공통되게 취급함을 말한다.(Jürgen Bolten 1992: 68-69) 또 같은 사무소내의 업무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는 사무소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끼리, 일반 업무처리 시 의견교류 및 일반인 상대로 상담할 때 법률전문어의 사용은 각각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대체 방안이 법률독어 연구대상을 확정짓는 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는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이는 법률전문어 및 언어연구자들의 앞으로의 과제이다.

조: 방경원(2002), 특히 490-492쪽.

8) 이 예는 오토 W. Otto(1981), S. 51f.가 제안했으며 다음 문헌에서 재인용 했음: Jürgen Bolten(1992), Besonders S. 68.

### 3.2. 텍스트유형

법률독어를 분류하는 데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형태는 텍스트유형이다. 법률텍스트 중 법조문, 주석, 판결문을 비교할 때 법조문은 특이하다. 텍스트의 속성을 따질 때 종종 응집성이 논의되는 데 법조문에서 각 조문은 독립적으로 간주되어 법 전체로는 응집성이 있는 지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조문과의 연결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경우 간텍스트성 Intertextualität의 시각에서 응집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내의 이런 응집성의 차이는 텍스트를 유형 분류할 때 참고가 되며 특히 법률텍스트에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sup>9)</sup>

법률 텍스트유형도 텍스트유형이기 때문에 그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텍스트유형을 구분하는 데 텍스트기능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텍스트유형을 분류하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텍스트기능에 대한 논의를 살피면서 법률독어 텍스트유형 분류에도 참고한다.

브링커 Klaus Brinker에 따르면 텍스트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텍스트기능이란 용어는 발화 생산자의 의사소통 의도라고 명칭하며 이 의도는 텍스트 속에서 일정하며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다시 말하자면 의사소통 공동체 내에서 의무적으로 고정된 수단으로 표시된다.”

“Der Terminus ‘Textfunktion’ bezeichnet die im Text mit bestimmten, konventionell geltenden, d.h. in der Kommunikationsgemeinschaft verbindlich festgelegten Mitteln ausgedrückte Kommunikationsabsicht des Emittenten.”(Klaus Brinker, 1992: 93)

이 정의에 따르면 텍스트기능은 바로 의사전달 의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의도는 해당 언어공동체에서 관습적으로 고정된 표현수단으로 서로 소통된다.

9) 다음 글에서는 독일민법 제571조 §571 BGB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예로 텍스트 응집성을 시험한다. 참조: Dietrich Busse (1992), *Besonders Kap. 2.*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언어수단을 연구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미 알려진 화행 Sprechakt에서<sup>10)</sup> 텍스트기능을 유추하려고 한다. 쉘 Searl에 의해서 체계화된 화행이론은 그 분석대상이 문장에 국한된 만큼 이를 텍스트 전체에로 확대 적용시키는 데 무리가 있다. 완결된 하나의 텍스트 내에는 쉘식의 화행이 다수 존재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여러 종류의 화행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으로 텍스트기능을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로쎬 E. U. Große는 텍스트 전체를 특징짓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텍스트기능으로 정의하면서 세부적인 화행과 텍스트 전체의 기능을 차별화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텍스트 수용자가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텍스트기능이 정해진다고 보며 이는 텍스트기능이 임의적이지 않고 의사소통 규약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E. U. Große 1976: 26, 68) 하지만 텍스트기능으로 지칭하는 지배적인 화행을 언어적으로 어떻게 점검할 지에 대한 제안은 없다. 텍스트유형을 구분하는 또 다른 주장으로 텍스트유형이 해당 언어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의사소통 목적을 전달할 목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목적에 따라 텍스트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가정도 납득은 가지만 언어학적인 설명 근거를 갖지 못한다. 이런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목적이 생겨나는 언어외적인 여러 조건들을 텍스트유형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텍스트기능, 의사소통 목적의 해명은 텍스트유형 연구에서 기초적인 연구과제이다.

법률독어에 특화된 텍스트유형을 연구할 때도 위에서 다룬 텍스트기능과 의사소통 목적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 두 범주는 법률독어 텍스트유형 분류와 함께 법률독어 분류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들어 텍스트유형 분류는 실용적인 면에서 시도된다. 이는 분류할 텍스트를 먼저 선정하고 각각의 텍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하여 공통 범주를 충족하는 텍스트끼리 모아 유형화하는 것이다. 도서관이나 자료 보관소와 같은 곳에서 법률분야 텍스트를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할 때 실제 응용할 수 있다. 이런 텍스트유형 분류는 임의적이어서 법률독어 텍스트유형 전체를 일관

10) 다음 글에서는 Austin과 Searl, Klaus Brinker, Peter von Polenz, E. U. Große, Burkhard, Habermas의 화행 개념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텍스트기능과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참고: Dietrich Busse(1992), Besonders S. 75-82.

되게 분류하려는 시도와 대립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적으로 텍스트유형을 분류할 때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범주가 있으며 이런 인식 방법은 텍스트유형 일반적인 범주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법률독어 텍스트유형 분류를 하는데 실용적인 분류 작업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연구성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4. 법률독어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법률독어 연구방법으로 우선 법률독어 텍스트유형 분석모델을 소개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독일의 판결문 표제를 살펴보면서 분류 모델을 점검한다.

##### 4.1. 법률독어 텍스트유형 분류모델

법률독어의 실증적인 연구자료로 텍스트유형을 택하게 되면 연구방법도 텍스트유형 분석방법을 따르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텍스트유형 연구방법과 차이가 나는 것은 법률독어를 사용하는 특수한 의사소통 조건과 법률독어 사용자에게 고유한 의사소통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 점이다. 텍스트유형 연구와 관련해서 던질 수 있는 일반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다:

- 1) 누가 누구에게
- 2)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상대가 어떤 기대감을 가질 까를 예상하며
- 3) 텍스트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배열하면서 어떤 모양의 텍스트구조를 선택하며
- 4) 어휘는 어떻게 적절하게 취하고
- 5) 문법형식을 선택하는 데는 어떤 계산이 있는 가 하는 물음이다.

물음 1)과 2)는 텍스트 외적인 구성요소로 언어의 기능관찰에 물음 3), 4), 5)는 텍스트 내적인 구성요소로 언어의 구조를 해명하는 데 소용된다. 이런 물



음에 기초한 텍스트유형 분석모델은 언어의 기능과 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언어현상을 현실적으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언어의 기능과 구조 사이에는 반드시 1:1 대응의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하나의 텍스트종류가 전문적인 성격을 가질 때 기능에 따라 구조도 어느 정도 일정한 모양을 취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텍스트유형 분석에서 이런 분석모델을 자주 응용한다. 다음에는 법조문, 고소장, 판결문의 텍스트유형을 제시된 모델에 따라 간략히 기술하면서 이런 분석모델이 어떻게 기능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법조문, 고소장, 판결문의 생산자와 수용자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다. 법조문 생산자는 법률이 정하는 특징인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으나 법조문 생산에는 법률 전문인과 일반인도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게 된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 대상이 손상되었을 때 고소하게 된다. 고소를 하려면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은 필수적이다. 이 고소장은 피해를 받은 법률대상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법률요건을 잘 알고 있는 전문인이 대리하게 된다. 판결문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검증받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전문인이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대신 작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의 대리인이다. 법관은 대리인인 만큼 주관성을 극도로 배제하며 주어진 법의 테두리 속에서 공무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또한 법이 만민에게 공평해야 하듯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듯 세 텍스트유형의 생산자는 대부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법의 효력은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에 세 텍스트의 수용자는 일반인이다. 고소장의 경우는 일반인이 전문가를 통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이 기관을 통해 다시 가해자인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복합적인 경로를 취한다.<sup>11)</sup>

텍스트유형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성을 알게 되면 수용자의 기대감을 감안한 텍스트 작성의 목적이 정해지게 된다. 특히 법률전문 텍스트유형의 경우 텍스트 작성목적은 규범적으로 철저히 제약된다. 또한 같은 법률독어 텍스트유형

11) 고소장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고소인이 고소장 한 부를 법원에 또 다른 한 부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소할 사람에게 전달하며 이런 전달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참고: Eva Wiesman (1999), *Besonders* Kap. 2.1

도 텍스트상황에 따라 텍스트기능은 달라진다. 법조문은 법관에게는 법 판단을 내리는 데 지침이 되지만 일반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텍스트기능은 법률 텍스트유형별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sup>12)</sup>

텍스트구성, 어휘선택, 문법형식의 선택에서도 처음부터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존재하는 텍스트 내적인 형태는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최적의 모양에 이르렀다고 본다. 특히 법률분야에서는 텍스트 기본형태는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으며 규범화되면서 해당 사회에서 특정한 텍스트유형으로 통용된다. 세 텍스트유형 중 텍스트구성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민법이든 형법이든 같은 법률사건을 다룰 경우 기본 어휘들은 유사하다. 문법 형식은 의도한 정보가 명확하면서 간결하게 전달되도록 선택된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고소장을 비교할 때 이탈리아 고소장의 경우 마침표를 기준으로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는 이탈리아 말의 문법구조로 고소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구성해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3)</sup>

위에서 설명한 텍스트 분석모델은 텍스트유형 분류목적에 따라 간략화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텍스트 외적인 변수를 고정시키면 텍스트 내적인 요소들의 변화 양상만 집중 관찰하는 텍스트 분석모델을 가정하게 된다. 텍스트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형별 텍스트분석이 사전 작업되어야 한다. 법률독어로 된 텍스트유형도 이런 사전 작업을 근거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이때 분류 가능한 법률 텍스트유형들을 정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 분류모델 설정에 매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 4.2. 독일판결문 표제 분석<sup>14)</sup>

이 장에서는 독일판결문 표지를 텍스트기능과 언어를 포함한 텍스트구조 분석을 통해 앞장에서 설명한 텍스트유형 분류모델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12) 참조: Dietrich Busse(1992), *Besonders* Kap. 3.

13) 참조: Eva Wiesmann(1999), *Besonders* Kap. 2.3. 이탈리아와 독일에서의 고소장 형식에 대한 분석이 예문 제시와 함께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14) 이 텍스트유형 분석은 다음 글에서 참조함: Jan Engberg(1992).

#### 4.2.1. 분석 텍스트

“공포일:  
법원서기관: 서명

### 판결

#### 국민의 이름으로

원고: 아들 A, 아버지 A가 대리함  
소송대리인: D-도시의 변호사 B와 C

피고: E  
소송대리인: D-도시의 변호사 F와 C

상기 양측의 영업용 임대 분쟁과 관련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에 대해

키일 지방법원 제 12 민사부는 지방법원 판사 H 박사 단독으로 행한 1989년  
7월 13일자 구두심리에 근거하여

다음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판결문]

verkündet am xx  
gez.  
als Urkundsbeamter der Geschäftsstelle

### Urteil

#### Im Namen des Volkes

In dem Rechtsstreit

des Herrn A jun.,  
vertreten durch seinen Vater Herrn A. sen.

Klägers,

- Prozeßbevollmächtigte: Rechtsanwälte B und C in D-Stadt -

gegen

Herrn E,

Beklagten,

- Prozeßbevollmächtigte: Rechtsanwälte F und G in D-Stadt -

wegen Vollstreckungsabwehr im Rahmen gewerblicher Mietstreitigkeiten

hat die 12. Zivilkammer des Landgerichts Kiel auf die mündliche Verhandlung vom 13. Juli 1989 durch den Richter am Landgericht Dr. H als Einzelrichter

für Recht erkannt: [Urteilsspruch] (Jan Engberg 1992: 172)

#### 4.2.2. 텍스트분석

이 판결문 표지는 단순한 겉 장식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4.1.장에서 다룬 텍스트유형 분류모델에 따라 이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브링커의 텍스트기능 중 공시적 기능을 충족한다. 법원은 명시적으로 텍스트를 보내는 이로 집행판사나 상급법원 판사는 암시적이지만 텍스트를 받는 이로 된다. 법원은 텍스트를 보내는 측으로 필요한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참여자로 원고와 피고측 소송당사자에 대한 명시와 함께 관련 분쟁 사건이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판결되었고 그에 따른 판결문이 정당함을 법원서기의 확인 및 날짜와 함께 공포됨도 명시하고 있다.

텍스트구조는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제목(판결), 형식적인 문구(국민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문법상의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문장. 제목과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은 공포된다는 분사 *verkündet*와 날짜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문 *am xx* 이 함께하는 부가문을 갖는 데 이 부가문은 독립적인 문 성분이다. 이 부가문 밑에 서명자의 이름과 그의 지위 *als Urkundsbeamter der Geschäftsstelle*가 표시된다. 이 공포자는 판사와는 다른 인물이다.

문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für Recht erkennen*라는 동사구와 그 부속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의 시제는 현재완료이다. 문장의 주어는 법원이며 부사상당어 셋을 포함한다. 첫 번째 부사상당어는 문장 첫 머리에서 장소적 전치사구 (*In dem Rechtsstreit ...*)와 명사 *Rechtsstreit*를 수식하는 부가어 셋을 포함한다. 이 부가어는 원고, 피고 및 분쟁 원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공간적으로 여백을 두어 구분을 쉽게 했다. 주어 다음에 오는 부사상당어 둘은 각각 독립적이다. 첫 번째 부사상당어는 원인의 관계를 두 번째 부사상당어는 도구적 관계를 밝히는 전치사와 함께 각각 공판일자와 해당 판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분석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독일판결문의 표지는 공시의 텍스트기능을 가진다. 이는 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는 정보, 권위를 가진 텍스트 보내는 이, 텍스트 받는 이, 참여 당사자에 대한 정보, 판결 공포 날짜 등이 명시적으로 표시되면서 그 공시요건을 충족한다. 판결문표지 텍스트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부속 성분이 많아 처음 접할 때 혹은 비전문가에게는 다소 어렵게 보일 수 있다. 이는 공간적인 여백과 전치사로 그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한 문장으로 밀착된 정보의 해독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독일판결문 표지에서 이런 텍스트구조와 언어 선택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어 하나의 유형을 형성한다.

이런 텍스트유형도 문화와 언어구조가 틀린 우리말로 옮길 때 수정이 필요하다. 처음 부분의 분사 구문이나 세 번째 부분의 한 문장에 포함된 정보는 공시의 텍스트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언어구조상 새로운 문법 구조를 선

택해야 자연스럽다. 두 번째 부분 형식적인 문구는 관습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길 때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5. 맺음말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법률독어는 법 전문가들이 다루는 법률독어와 비교하여 연구목적이 다르다. 법 전문가들은 법의 논리추구나 해석의 차원에서 법률독어를 연구하는 반면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는 언어학자들은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법률독어에 관심을 갖는다. 이 점에서 언어학자는 법률독어의 의사소통 기능에 연구목표를 설정한다. 법률독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의 앞으로의 과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 분류하고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에도 연구성과를 쌓아 자리 매김 하면서 법률독어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연구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교수법과 교재개발도 법률독어 연구자들의 연구과제이다.

## 참고문헌

- 김순임(2001): 한국법학에 있어서 독일어의 위상 - 다른 언어와 비교 관점에서. 실린 곳: 독어교육 제22집. 7-28쪽.
- 김양훈(2000): 독일 관청텍스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실린 곳: 독어교육 제20집. 219-250쪽.
- 방경원(2002): 경제 독어 연구 - 개념 파악과 연구 현황 소개. 실린 곳: 게르만어문학 제 12집. 한국의국어대학교 게르만어문학 연구회. 483쪽-508쪽.
- Bausinger, Hermann(1976): Sprachschranken vor Gericht. In: Konrad Köstlin/Kai Detlev Sievers(Hgg.), Das Recht der kleinen Leute. Festschrift zum 60. Geburtstag für Karl-Sigismund Kramer. Berlin.
- Bolten, Jürgen(1992): <Fachsprache> oder <Sprachbereich>? Empirisch-pragmatische Grundlagen zur Beschreibung der deutschen Wirtschafts-, Medizin- und Rechtssprache. In: Theo Bungarten(Hg.), a. a. O. S. 57-72.
- Brinker, Klaus(1992):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

- begriffe und Methoden. 3., durchges. und erw. Aufl. (Grundlagen der Germanistik; 29) Berlin: Erich Schmidt.
- Bungarten, Theo(Hg.)(1992): Beiträge zur Fachsprachenforschung: Sprache in Wissenschaft und Technik, Wirtschaft und Rechtswesen. (Hamburger Arbeiten zur Fachsprachenforschung; Bd. 1) Tostedt: Attikon-Verl.
- Busse, Dietrich(1992): Recht als Text: linguistische Untersuchungen zur Arbeit mit Sprache in einer gesellschaftlichen Institution. (Reihe Germanistische Linguistik; 131) Tübingen: Niemeyer.
- Engberg, Jan(1992): Textanalyse von juristischen Texten auf kommunikativer Grundlage. In: Theo Bungarten(Hg.), a. a. O. S. 162-182.
- Große, E. U.(1976): Text und Kommunikation. Eine linguistische Einführung in die Funktionen der Texte. Stuttgart.
- Hoffmann, Lothar/ Hartwig Kalverkämper/ Herbert Ernst Wiegand (Hgg.) (1998): Fachsprachen: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Fachsprachenforschung und Terminologiewissenschaft. (Handbücher zur Sprach-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Bd. 14) Halbbd. 1. Berlin; New York: de Gruyter. [HSK Bd. 14. Halbbd. 1.로 약함]
- Horn, Dieter(1966): Rechtssprache und Kommunikation. Grundlegung einer semantischen Kommunikationstheorie. Berlin.
- Jean d'Heur, Bernd(1998): Die neuere Fachsprache der juristischen Wissenschaft seit der Mitte des 19. Jahrhundert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Verfassungsrecht und Rechtsmethodik. In: HSK Bd. 14. Halbbd. 1. S. 1286-1295.
- Kallmeyer, Werner(1983): Mündliche Kommunikation vor Gericht. In: Recht und Sprache. Hrsg. v.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Bonn. S. 139-151.
- Kniffka, Hannes(Hg.)(1990): Texte zur Theorie und Praxis forensischer Linguistik. Tübingen.
- Otto, Walter(1977): Amtsdeutsch heute - Bürgernah und Praxisnah. Stuttgart.
- Sandrini, Peter(Hg.)(1999): Übersetzen von Rechtstexten: Fachkommunikation im Spannungsfeld zwischen Rechtsordnung und Sprache. (Forum für Fachsprachen-Forschung; Bd. 54) Tübingen: Narr.
- Savigny, Friedrich Karl von(1802): Juristische Methodenlehre. ("Anleitungen zu einem eigenen Studium der Jurisprudenz." 1802/3) Hrsg. v. Gerhard

Wesenberg. Stuttgart 1951.

Wagner, Hildegard(1972): Deutsche Verwaltungssprache der Gegenwart. Düsseldorf.

Wiesman, Eva(1999): Berücksichtigung von Textsortenkonventionen bei der Übersetzung von Rechtstexten am Beispiel der Übersetzung italienischer *Atti di citazione* ins Deutsche. In: Peter Sandrini(Hg.), Übersetzen von Rechtstexten. S. 155-182.

## Zusammenfassung

### Zur linguistischen Erforschung des Rechtsdeutschs - Begriffserklärung und Untersuchungsmethode -

Bang, Kyung-Won(HUFS)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 es versucht, die linguistische Erforschung des Rechtsdeutschs vorzustellen. Die schriftlichen Fertigkeiten spielen bei den juristischen Angelegenheiten eine wichtige Rolle und hätten daher die Sprachforscher interessiert. Trotzdem wurde das Rechtsdeutsch bisher am meisten von den Juristen untersucht. In der Reihe der Fachsprachenforschung interessiert jetzt das Rechtsdeutsch auch die Sprachforscher. Freilich ist das Interesse der Sprachforscher an dem Rechtsdeutsch anders als das der Juristen. Jene versuchen, die Problematik der sprachlichen Kommunikation zwischen dem Juristen als Fachmann und dem Laien beschreibend zu erklären.

Im zweiten Kapitel wurden die Sprachgeschichte und die Forschungsperspektive des Rechtsdeutschs kurz erläutert. Im dritten Kapitel wurde die Problematik des Begriffs Rechtsdeutsch wie folgt diskutiert: Vor jeder 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g muß man sich über den Untersuchungsgegenstand klar werden. Es ist aber besonders schwierig, das Rechtsdeutsch begrifflich zu erfassen. Denn der Fachlichkeitsgrad des Rechtsdeutschs ist vertikal unterschiedlicher ausdifferenziert als der anderer Fachsprachen. Es kann dadurch begründet werden, daß das Rechtsdeutsch wie das Wirtschaftsdeutsch mit unserem Lebensumfeld zu tun hat und daß es daher sowohl in der Fachgemeinschaft als auch im Alltag gleich häufig verwendet wird. Im vierten Kapitel wurde die Untersuchungsmethode erarbeitet. Es geht um ein Textmodell, mit



dem man eine Fachtextsorte beschreiben kann. In dem Modell wurden die Merkmale sowohl für die Sprachstruktur als auch für die Sprachfunktion mitberücksichtigt. Schließlich wurde im fünften Kapitel einigen Bemerkungen gewidmet.

**[검색어]** 전문어, 법률독어, 텍스트유형  
Fachsprachen, Rechtsdeutsch, Textsorte

방경원

122-8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 2동 515-30.

kywpng@bcline.com